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7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채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공매 압류재산 매수 제한 사유 추가

개정안은 압류재산 공매시 매수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현행법상 ① 채납자, ② 세무공무원 및 ③ 공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신설).

「농지법」에 따른 농지(같은 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같은 법에 따른 면허) 등 특정 압류재산은 인·허가 등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매수할 수 있으나, 공매시 그 매수의 제한은 현행법이 아닌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매수 제한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해당 압류재산의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의 근거 법률(「농지법」, 「수산업법」 등)에 따라 공매시 매수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이를 현행법에 명시하는 것은 ① 공매와 관련된 업무 관계자·이해관계자 등의 이해를 쉽게 하고, 해석상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② 「국세징수법」은 2023년 12월 개정(2024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이미 동일한 규정을 명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2) 매각결정 관련 제도 개선

개정안은 ① 공매재산이 낙찰된 후 “매각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사유에 낙찰자가 “매수가 제한된 자”인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92조제1항 제2호), ② 공매재산 매수인이 다른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결정”을 1회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제2항 신설).

① 매각결정 미이행 사유 추가

현행법은 공매재산이 낙찰된 후 바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낙찰자가 매입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매각결정” 절차를 거쳐 매각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사유에 “낙찰자가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사유에 “공매재산의 매수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매재산의 매수가 제한된 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매수제한의 개념상 당연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입법불비를 시정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도 2020년 12월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유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② 매각결정 연기 근거 신설

현행법상 “매각결정”은 개찰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낙찰자가 공매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상 농지, 「수산업법」상 어업권 등 취득을 위하여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낙찰자가 해당 인·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국세징수법」도 2023년 12월 개정(2024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이미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3) 체납처분 중지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체납처분 중지의 사전 절차 중 “1개월간 공고”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3항).

현행법 제104조제1항·제2항은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체납처분을 중단하도록 하면서, 그 사전 절차로서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② 1개월간 공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② 1개월간 공고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체납처분 중단은 처분 실익이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현행법상 압류 해제시에는 당초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등에게 해제 통지를 하는 절차도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고까지 실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국세징수법」도 2020년 12월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이미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4)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개정안은 「의안번호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따라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려는 것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항).

이는 「의안번호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반영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은 공매 개찰 후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을 미구비한 경우 매각결정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인데, 해당 자격의 취득이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매각결정 기한의 추가 연장을 허용하면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매 개찰 후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을 미구비한 경우 매각결정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인데, 해당 자격의 취득이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매각결정 기한의 추가 연장을 허용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갖출 때까지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안 부칙 제2조 중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를 “당시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 ----- ----- ----- ----- ----- ----- -----.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낙찰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2. -----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	2. (개정안과 같음)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3.·4.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u>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 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u>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 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갓출 때까지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u>
<u>②·③</u> (생략)	<u>③·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③·④</u> (개정안과 같음)
<u>④</u>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u>⑤</u> 제4항----- ----- ----- ----- -----	<u>⑤</u> (개정안과 같음)

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 할 수 있다.	----- ----- -----. 부 칙 제2조(매각결정 기일 의 연기에 관한 적 용례) 제92조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u>이후 공매 공고를 하는 경우부 터</u> 적용한다.	부 칙 제2조(매각결정 기일 의 연기에 관한 적 용례) ----- ----- ----- <u>당시 매각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u> ---.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를 각각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78조제6항 중 “매각결정 기일”을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을 “매각결정 기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 중 “제87조”를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구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92조의2제4항 중 “제92조제4항”을 “제92조제5항”으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채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를 “(채납처분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납처분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생략)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 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 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 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및 <u>같은 법 제56조제1항</u> <u>제2호 · 제3호</u> 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② ----- ----- ----- ----- ----- <u>같은 법 제56조제1항</u> <u>제2호 · 제2호의2 · 제3호</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 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 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호 · 제4호에 따른 납 부지연가산세 및 <u>같은 법 제56</u> <u>조제1항제2호 · 제3호</u> 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 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 ----- ----- ----- ----- <u>같은 법 제56조</u> <u>제1항제2호 · 제2호의2 · 제3호</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생략)	제77조(매수인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 ⑤ (생 략)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
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
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
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
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
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
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
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
지 못한다.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매각결
정 기일 -----

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낙찰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4. (생략)

<신설>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
--

3.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 ----- ----- -----.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u>제92조제4항</u>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제92조제5항</u>----- ----- ----- -----.
⑤ ~ ⑦ (생략) 제104조(<u>채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u>)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u>채납처분의 중지</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거쳐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